

LPG충전소 과충전방지장치 설치에 따른 문제점

탱크개방에 따른 문제

- LPG충전소는 액법시행규칙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규 시행 시점인 1999년 4월 1일부터 2년이내인 2001년 3월31일 까지 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돼있음. 그러나 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려면 탱크를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동 규칙 시행이전에 이미 개방검사가 완료된 (1996.3.31~1999.3.31기간중 완료분) 충전소의 저장탱크는 오직 과충전방지장치 설치만을 위해 별도로 개방을 해야 하는 상황임
- 이럴 경우 탱크개방에 따른 사고위험의 가능성은 물론 개방시 잔가스를 소진시키고 영업을 정지(2~3일)해야 하기 때문에 LPG소비자들의 민원발생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.

과충전방지장치의 설치에 따른 기술적문제

- 과충전방지장치의 설치에는 다음 두가지 방법이 있음.
 - 가) 기존 float gauge에 설치할 경우
 - 나) 재고관리 및 제어 시스템장치를 설치할 경우

- 위 가)의 경우 탱크를 개방하지 않고 기존 설치된 액위측정장치(Float Level Gauge)를 이용하여 액위에 따른 경보만 할수 있도록 설치가 가능하나 기존 Float Gauge의 고장 및 오작동이 잦아 설치를 하고도 이용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음.
- 이와관련 일부 정유·수입사는 설치기간 및 비용이 비록 많이 소요되더라도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재고관리 및 제어시스템을 갖춘 나)의 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치할 계획임. 그러나 나)로 설치할 경우 정해진 기한 (2001년 3월31일)내에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.

업계 건의사항

- 과충전방지장치의 설치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으므로 액법시행규칙이 적용된 시점부터 5년(법적개방기간 1999.4.1~2004.3.31)이내에 탱크 개방 검사기간중 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주실것을 건의함.